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가정폭력피해자의 주거 자립지원 실효성 제고 〉
■ 김남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9772호)

2025. 9.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주거 자립지원 실효성 제고	3
※ 참고자료	16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남근의원 등 22인
2. 제 안 일 : 2025. 4. 11.
3. 회 부 일 : 2025. 4.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이후 자립 지원이 필요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자립지원은 피해자가 먼저 주거를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보호시설의 담당자가 그 주거를 방문하며 통해 생활·교육·취업 등의 자립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들 대부분은 퇴소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거도 알지 못하고 따라서 퇴소 이후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자립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자립 지원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는 피해자의 가정폭력 보호·지원을 위하여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8조의 5에서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거 지원과

그에 따른 지속적인 자립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음.

그래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은 시설을 퇴소하는 피해자의 주거 자립 지원을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8조의4, 제48조의8의 공공임대 지원 신청, 동의서 제출, 입주자 자격 확인 등 업무를 피해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주거지원센터 또는 「주거기본법」 제22조의 주거복지센터의 장에게 퇴소하는 피해자에 대한 주거문제 내지 주거복지 관련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6 신설).

Ⅲ. 검토의견

1.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주거 자립지원 실효성 제고

개정안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함)의 장이 보호시설을 퇴소하는 피해자의 주거 자립지원을 위하여 공공임대 지원 신청 등을 피해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지원센터 또는 주거복지센터의 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주거문제 내지 주거복지 관련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8조의6(피해자의 주거 자립지원) ①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시설을 퇴소하는 피해자의 주거 자립지원을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8조의4, 제48조의8의 공공임대 지원 신청, 동의서 제출, 입주자 자격 확인 등 업무를 피해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다. ② 보호시설의 장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주거지원센터 또는 「주거기본법」 제22조의 주거복지센터의 장에게 보호시설을 퇴소하는 피해자에 대한 주거문제 내지 주거복지 관련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현행법 제4조제1항1)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및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직업훈련 등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가정폭력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은 가정에서 벗어나 제7조²⁾에 따른 보호시설에서 숙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³⁾, 보호시설을 퇴소하는 경우 직업교육이나 진학을 위한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취업 정보를 안내받고, 1인당 500만원(아동 1인당 250만원)의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직업훈련 등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서비스 제공
5. 법률구조 및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공
6.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7.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8. 피해자와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상담원 등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9. 가정폭력 피해의 특성을 고려한 피해자 신변노출 방지 및 보호·지원체계 구축
10.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보호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보호시설의 업무) ① 보호시설은 피해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다만,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에게는 제1호 외의 업무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장기보호시설은 피해자등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업무(주거편의를 제공하는 업무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숙식의 제공
2.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4.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5.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6.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7.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8. 그 밖에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3) 2024년 기준 가정폭력 보호시설은 전국 65개소이고 연중 입소인원은 약 1,500명 수준임.

‘퇴소 시 자립지원금’을 받으며⁴⁾, 여성가족부에서 수행하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임대주택을 제공⁵⁾받을 수 있음.

또한, 제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⁶⁾에 따라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데,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을 부여받은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⁷⁾,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별표 4]⁸⁾, 제17조의2제1항·[별표 5의2]⁹⁾ 및 「여성·아동

4) 2025년도 예산 편성 내역: 10억 3,600만원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5(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보호비용을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4의2. 퇴소 시 자립지원금

5) 가정폭력·성폭력 등 여성폭력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 제공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사업’용 임대주택 중 일부를 별도 물량으로 확보하여 저가에 임대하는 사업으로, 2025년 2월 말 기준 전국 16개 시도 28개 운영기관에서 356호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2024년 말 기준 여성폭력피해자 임대주택 입소율은 85%(총 351호 중 297호 입주, 공실 54호) 수준임.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자) ① 법 제8조의5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로서 그 퇴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법 제7조의4제3호에 따라 퇴소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로서 그 퇴거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여 퇴거하게 된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자의 선정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7)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공공주택의 공급) ① 공공주택의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의 유형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주거지원필요계층과 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지원필요계층 및 다자녀 가구의 요건, 우선 공급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8)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이하 “국민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10)에 따라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¹¹⁾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음.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2. 우선공급

공공주택사업자는 일반공급의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공급비율 범위 내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구분	공급비율	입주자격
나. 노부모 부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20 퍼센트 범위	무주택세대구성원[1)의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한다]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 <u>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u> 」 제2조제3호에 따른 <u>피해자</u> 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무주택 및 소득요건은 제외한다)을 충족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u>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u> 에 해당하는 사람

- 9)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통합공공임대주택(이하 “통합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2**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2. 우선공급

가.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호에 따른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기준에도 불구하고 공급하는 주택의 60퍼센트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나목1)부터 10)까지의 구분에 따른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청년, 예비신혼부부 또는 소년·소녀가정의 경우에는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급할 수 있으며, 1인 1주택 또는 2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

구분	공급비율	입주자격
3)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3퍼센트 범위	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 <u>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u> 」 제2조제3호에 따른 <u>피해자</u> 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u>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u> 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무주택 및 소득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 10) [참고자료] 2025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참조.

- 1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주택”이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공공임대주택 지원신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따르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정책의 효과에 한계가 있음.

2024년 11월에 실시한 “가정폭력피해자 주거권 보장 및 주거지원 정책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주거지원 시설에 대한 정보 부재로 피해자들의 주거선택권에 제약이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가정폭력 피해자 임대주택 입주우선권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부터 2024년 9월 까지 약 5년간 가정폭력피해자 유형으로 임대주택 입주우선권을 신청한 건수는 31건, 계약한 건수는 7건에 불과하다는 자료를 제시함¹²⁾.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라는 특성상 피해자가 원래의 거주지에 돌아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개정안은 보호시설의 장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공공임대주택 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주거지원센터 등에 주거복지 관련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호시설을 퇴소하는 가정폭력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공임대주택) ①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2. **국민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의2. **통합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12) 백혜련·김한규·이수진·권향엽·김남근·김남희·김윤·모경중·백승아·서미화·임미애·전진숙·차지호·김선민의원·여성폭력통합지원상담소연대·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한국여성의전화 주관, “가정폭력피해자 주거권 보장 및 주거지원 정책 개선을 위한 토론회”, 2024. 11. 25, 41~43쪽.

피해자들에 대한 주거 자립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먼저, 보호시설의 장의 피해자 대리와 관련(안 제8조의6제1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¹³⁾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¹⁴⁾시 입주자 모집은 원칙적으로 인터넷접수의 방법으로 모집하되,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접수의 방법으로 청약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방문접수의 방법으로 청약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계한 공공임대주택 신규 공급 모집 현황(2022년~2025년 1월)¹⁶⁾을 보면, 총 공급신청 신청인 중 인터넷 접수

1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 ①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및 입주자 관리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이하 “입주자모집공고”라 한다)를 할 때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내용(제5항의 경우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입주자모집 방법) ② 사업주체(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 제50조 제1항에 따라 청약접수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을 포함한다)는 인터넷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되,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접수의 방법으로 청약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방문접수의 방법으로 청약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급”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15) 실무상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모집공고 시 위임장 서식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토지주택공사(SH) 등 일부 지방공사는 온라인 청약시스템을 운영하여 인터넷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음.

16) < 공공임대주택 신규 공급 모집 현황(2022년~2025년 1월말) >

자가 대부분으로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인터넷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터넷상 본인인증절차¹⁷⁾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있는바, 인터넷상 본인인증절차는 타인의 개인정보 악용을 방지하면서 해당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보호시설의 장이 본인인증절차를 포함하여 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상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단위: 신청인 수, %)

연번	사업명	공공임대주택 유형	공급 세대수	모집기간	인터넷	방문 접수	총 신청인 수
1	과천지식정보타운 S-10BL	통합공공임대주택	605	'22.02.15.-02.18.	17,936 (93.3)	1,282 (6.7)	19,218 (100)
2	남양주별내 A1-1BL	통합공공임대주택	575	'22.02.15.-02.18.	11,888 (93.9)	777 (6.1)	12,665 (100)
3	행정중심복합도시 6-3UR1BL	통합공공임대주택	200	'24.04.11.-04.15.	181 (100)	- -	181 (100)
4	행정중심복합도시 6-3UR2BL	통합공공임대주택	216	'24.04.11.-04.15.	1,348 (99.6)	6 (0.4)	1,354 (100)
5	과주운정3 A24	국민임대주택	806	'24.05.20.-05.24.	1,510 (86.6)	233 (13.4)	1,743 (100)
6	인천검단 AA35-2	국민임대주택	593	'24.06.25.-06.28.	1,627 (96.3)	62 (3.7)	1,689 (100)
7	행정중심복합도시 6-3M4BL	통합공공임대주택	159	'24.08.09.-08.13.	181 (100)	- -	181 (100)
8	서귀포대정	통합공공임대주택	37	'24.09.11.-09.12.	605 (98.4)	10 (1.6)	615 (100)
9	평택고덕 국제화계획 A-58	국민임대주택	378	'25.01.13.-01.17.	2,899 (96.7)	100 (3.3)	2,999 (100)

주1: 가장 최근 국민임대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신규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사업으로 한정하였음.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17) 본인인증절차는 인터넷상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가 실제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서, 구체적으로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즉, 인터넷상 본인인증절차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터넷접수의 경우에는 보호시설의 장이 본인인증절차를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신청 절차 전부를 대리하여 수행하기보다는 신청과정을 지원(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임.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현재도 실무상 보호시설의 장이 퇴소를 앞둔 피해자가 온라인을 통해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보조(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함¹⁸⁾.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¹⁹⁾에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²⁰⁾

한편, 개정안을 입법화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존중 및 개인정보 보호 측면을 고려할 때 보호시설의 장이 공공임대주택 공급 신청 등을 대리함에 있어 피해자의 동의를 받도록 명확히 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8²¹⁾의 입주자 자격 확인은 국토교통부

18) 한편, 여성가족부 및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도 방문접수 시에는 위임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등을 구비하여 제3자 대리신청이 가능하다고 함.

1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성가족부장관(법 제19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에 관한 사무

20)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를 발간하고, 해당 안내서에 따라 개별 법령에 따른 시설의 장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사전동의서를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함.

2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8(입주자 자격 확인 및 입주 관련 정보의 제공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또는 재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가 신청

장관이 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이를 보호시설의 장에게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체계상 적절하지 않으므로 대리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이 대리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보호시설의 장이 대리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거나 필요하다면 대통령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위임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겠음.

다음, 피해자의 주거복지 관련 지원업무 의뢰 관련(안 제8조의6제2항)

개정안 제8조의6제2항에서는 보호시설의 장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주거약자법”)」 제17조에 따른 주거지원센터의 장 또는 「주거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의 장에게 보호시설을 퇴소하는 피해자에 대한 주거문제 내지 주거복지 관련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주거약자법」 22)은 ‘주거약자’를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그 밖에

하는 경우 신청자 세대의 입주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 자격 확인을 위한 금융정보 및 신용정보 등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48조의4부터 제48조의7까지를 준용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자로서 입주자 자격이 확인된 자에게 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공급 가능한 주택 현황, 입주 대기 순서 등 입주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입주자 자격 확인 및 입주 대기 순서 등 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입주자 자격 확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 자격 확인기관의 운영 및 정보 제공 등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 31.] [시행일: 2025. 8. 1.]

22)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인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거지원센터는 주거약자의 주거문제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대한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

「주거기본법」 제22조²³⁾에 따른 주거복지센터는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주거실태조사 지원,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개정안은 피해자가 보호시설 퇴소 후에도 지속적으로 주거와 관련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거 관련 지원시설과 연계시켜 피해자의 안정적인 주거자립을 지원하려는 취지이나,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17조(주거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택개조비용 지원을 위한 대상 주택의 확인, 개조공사의 적정성 확인 등 주택개조 지원에 관한 업무
2. 주거약자의 주거문제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대한 지원업무
3. 주거약자가 거주하는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4. 그 밖에 주거약자용 주택과 관련한 정보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센터를 「주거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23) 「주거기본법」 제22조(주거복지센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다.

1.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2. 제20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지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4조(주거복지센터) ①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2.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 지원
3.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5. 그 밖에 주거복지와 관련된 사항

주거지원센터는 주거약자에 해당되는 사람(장애인보호시설 입소자²⁴⁾ 등)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주거복지센터는 센터 이용자를 제한하고 있는 기준이 없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호시설의 장의 의뢰가 없어도 피해자가 해당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실익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여성가족부가 지침 등을 통하여 피해자가 보호시설 퇴소 시 주거지원센터 및 주거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및 위치 등과 관련한 정보를 피해자에게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제8조의6제1항의 경우 현재 공공임대주택 지원 신청 시에도 제3자 대리 신청이 가능하고 보호시설 퇴소 후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준비 시 관련 정보 제공 및 신청 지원활동을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수용하고, 같은 조 제2항의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는 주거약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거복지센터는 지원업무 의뢰기관에서 제외하고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복지 관련 상담 및 생활관리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수용하는 입장임.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현장방문 접수 시 위임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갖춘 경우에는

24) 2025년 1월 기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총 63개가 있으며, 이 중 장애인시설(서울, 광주 2개)의 입소 정원은 19명(서울 12명, 광주 7명)임.

제3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고, 인터넷접수의 경우 본인인증절차를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안 제8조의6 제1항의 개정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개정안 제8조의6제2항에 대하여는 주거약자법은 고령자, 장애인, 장애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는 근거 법률인데 보호시설을 퇴소하는 피해자들은 주거약자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주거약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복지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주거문제·주거복지 관련 상담 등을 지원하게 된다면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므로 ‘주거지원센터’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²⁵⁾을 제시함.

관계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개정안 제8조의6제1항에 대하여 현재 현장방문 접수 시 위임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등을 구비하면 제3자 대리신청이 가능하여 개정실익이 적고, 보호시설의 장의 대리청약 시 피해자 본인의 최종 청약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및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는 개정안을 수용하는 입장임.

25) 국토교통부는 실제로 주거복지센터와 주거지원센터가 통합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644

[참고자료] 2025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제4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지침

라.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자격 부여(「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 **지원내용** : 가정폭력피해자를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으로 선정하는 특례 적용

○ **신청자격**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4]에 의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중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무주택 및 소득요건은 제외함

－ 지원요건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피해자

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 단, 피해자가 퇴소했을 경우 그 퇴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법 제7조의4 제3호에 따라 퇴소한 사람은 제외)

②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 단, 피해자가 퇴거했을 경우 그 퇴거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여 퇴거하게 된 사람은 제외)

※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위 소득기준에 부합해야 함

○ **우선 공급대상 임대주택** : 국가·지방자치단체·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에 필요한 증거서류(택1)**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 확인서

－ 여성가족부의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의 주거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 사실 확인서

○ 증거서류 신청·발급 절차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

- (피해자) 시·군·구청에 확인서 발급 신청서 작성 신청 : [서식 3]
- (시·군·구청장) 보호시설 또는 주거지원시설에 발급신청서 내용 확인 요청
- (보호시설·주거지원시설) 발급신청서 내용 확인 후 시·군·구청장에 제출 : [서식 4]
- (시·군·구청장) 신청자(피해자)에게 확인서 발급 : [서식 5]

- (피해자) 피해자가 입소·입주한 사실이 있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나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주거지원시설(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임대주택을 말함)이 소재하는 관할 시·군·구청장에 [서식 3]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 (시·군·구청장)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구청장은 해당 보호시설 또는 주거지원 시설에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 또는 확인 요청
- (보호시설·주거지원시설) 시·군·구청장의 확인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서식 4]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 보호시설 퇴소사유 기재요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보호시설의 퇴소) 각호의 어느 하나로 기재
 1. 보호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3.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4. 보호시설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등
- 주거지원시설 퇴거사유 기재요령 : 아래 중 어느 하나로 기재
 1. 입주 목적이 달성된 경우(사회복귀, 자립 등)
 2. 계약기간이 끝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
 4. 그 밖에 관리비 체납 등 입주자 준수사항 위반 등

※ 보호시설·주거지원시설의 장은 반드시 국민임대주택 관련 서류를 「시설 입소 확인서 발급대장」을 만들어 관리

- (시·군·구청장) 보호시설의 장 또는 주거지원시설의 장의 확인서내용을 관련 보고서류 등과 확인하여 최종 검토 후 [서식 5]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또는 「주거지원시설 입주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발급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보호시설·주거지원시설 입소기간을 충족하는지 여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입주) 여부를 검토 후 확인서 발급 여부를 결정
- ※ 보호시설 입소기간은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입주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시설 위치 노출 등으로 피해자가 다른 시설로 옮긴 경우에는 퇴소 1개월 이내에 다른 보호시설에 재입소하였을 경우에는 연속 입소로 봄 (A 보호시설 3개월 입소 후 퇴소, 1개월 내 B 보호시설 재입소하여 다시 3개월 입소 후 퇴소일 경우, 6개월 입소로 간주)

○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신청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임대주택의 우선입주권 부여 대상자)에 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주거문제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가정폭력 피해자 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가정폭력 피해자 전세임대주택 입주 :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7조제7항 및 제18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는 시·군·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통보 시 전세임대주택 공급 가능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7조(입주자 선정) ⑦ 시장등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 대상지역 공급 계획물량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제7조제1항제1호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한다.

4. 그 밖에 시장등이 주거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통보한 자

제18조(공동생활가정 전세임대 운영특례) ① 공동생활가정의 입주대상자 및 운영기관 선정 등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0조부터 제37조까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공동생활가정 전세임대는 해당 시·도의 행정구역에서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 가구 수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공급할 수 있다.

③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미리 공공주택사업자 및 도지사등과 지원주택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입주대상자) ① 이 지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 또는 사업시행자가 주거사다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거나, 법무부장관이 주거사다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한 범죄피해자에 한한다.(이하 “입주대상자”라 한다)

2.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인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관련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운영기관 등이 추천한 사람